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6건)

- 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 공개하도록 의결(21.10.1)
- ②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21.9.29)
- ③ 권익위, "법 시행 10년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 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21.9.30)
- ④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동린 간 큰 업체 적발(21.10.5)
- ⑤ 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상담)' 12회 운영.. 7건 해결(21.9.30)
- ⑥ 국민권익위, 공직자 92.9% "청탁금지법지지" 법 시행 초기 보다 증가(21.9.2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2021. 10. 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사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

또한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청 령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개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직윤리 확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 재산 및 재산 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경우 이 두 가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2.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공개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후 등록심사 및 변동사항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보 등에 공개·게시하도록 한다.
3. 각각의 헌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산공개 내역을 최초 공개시점부터 연도별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산하여 공개하는 (가칭)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운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한다.
4.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은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2021년 9월 30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등에 지원되는 공적재원과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 등 회계 및 공시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제안하며, 기부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익법인 등의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재 공익법인 등은 각기 다른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고 절차의 중복과 공시정보의 부족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바,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단일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및 공시자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공익법인 등은 보조금과 같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거나 세제지원을 받고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대중의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모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기준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한다.
3. 연차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 등 필요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공익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4. 기업 등 영리부문에 비해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공익법인 등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와 지침 제공 등 합리적 지원체계를 갖춘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한다.

2021년 9월 30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를 제안한다.

1.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현행 갑질 개념을 확장하여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허위신고 또는 금품·특혜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3. 정부가 고시 등을 통해 배포하는 각종 표준계약서에 '갑', '을' 용어 대신 해당 당사자의 명칭(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계약 또는 거래 관련 서류에서 '갑', '을' 용어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장한다.
4. 정부는 민간부문의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9월 30일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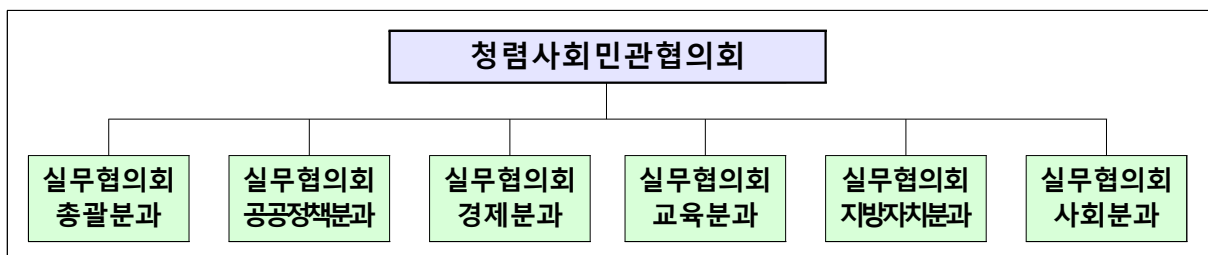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 문 (37명)	참 여 기 관 · 단 체	직 책 / 성 명	비 고
경 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 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박재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 민 사 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현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문용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 론 · 학 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호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공 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 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주)코딯	대표이사/ 정지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구조금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

(2021. 9. 2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

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도입되는 신고자 보호 제도들을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110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법 시행 10년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 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 총 104억 5,000만원 지급
-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해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 발표

(‘21.9.30.,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되었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에 처

음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우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을 제정 당시 180개에서 471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 대상법률: ('11)180개 → ('16)279개 → ('18)284개 → ('20)467개 → ('21)471개

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위 반 행 위	제 정 당 시	개정 후('18.5.)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이행강제금 : 이행 시까지 연 2회, 회당 3,000만 원까지 반복 부과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데 힘입어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요구·고발조치,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요구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왔다.

제도 초반 5년간('11~'15)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5년간('16~'20)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10년간('11~'20) 총 104억 5천만 원의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71개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밖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 공급 수량 속이고 저가 가공우유 공급, 보조금 지급 우유 되팔기 등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 빼돌려
- 우유 급식 관리체계 등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 요구

(‘21.10.5.,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

* 10,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 실제 공급한 8,547명 중 약 40%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

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 편취

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 공급업체가 공급 수량을 빼먹는 방법으로 1,052백만 원 편취(2년간)
 - 가정배달이란 취약점을 이용하여 학교와 학생을 속이고 배송 기준일 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을 편취

【 사례 】

- 무상지원대상자 10,347명에게 인당 184개의 우유를 공급하여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
 - $10,347\text{명} \times 184\text{개} \times 430\text{원} - 8,547\text{명} \times 144\text{개} \times 430\text{원} = 289,424,400\text{원}$
- 10,347명에게 2개월치 우유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 청구
 - $10,347\text{명} \times 60\text{개} \times 430\text{원} = 266,952,600\text{원}$

- ▲ 저가 가공우유 등을 공급하고 차액 350백 만 원 편취(2년간)
 - 공급품목이 아닌 저가 가공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백색우유를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 사례 】

- 실제 공급자 8,547명 중 40%에게 백색우유 대신 가공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
 - $8,547\text{명} \times 144\text{개} \times 0.4(40\%) \times 100\text{원}(\text{백색우유와 사과나무 매입차액}) = 49,230,720\text{원}$
- 무상지원대상자에게 백색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타 업체에 재판매
 - $180\text{원}(\text{우유1개당 부담이득금}) \times 685,000\text{개}(\text{판매개수}) = 123,300,000\text{원}$

- ▲ 계약과 보조금 집행의 이원화로 부정수급 사각지대 발생

✓ (계약) 각 학교들은 우유 배송, 무상급식 대상자 관리 등 부실

✓ (집행)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 미흡, 실태점검 미 실시

※ 급식관리 일원화 또는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마련 필요

- ▲ 멸균유 음용 불편 및 우유 기피 학생에 대한 품목 선택권 제한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생우유 제공 및 일부 가공유 허용 등 대책 강구

※ 현행 다량(60개)의 멸균우유 일시 배송으로 인한 보관·음용 불편 및 체질상 우유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 지원 미흡

□ 개요

-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예산)** 지원형태 : 보조 100%(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한도)** 지원한도 : 430원/200ml
- **(급식일수)** 연간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자격)**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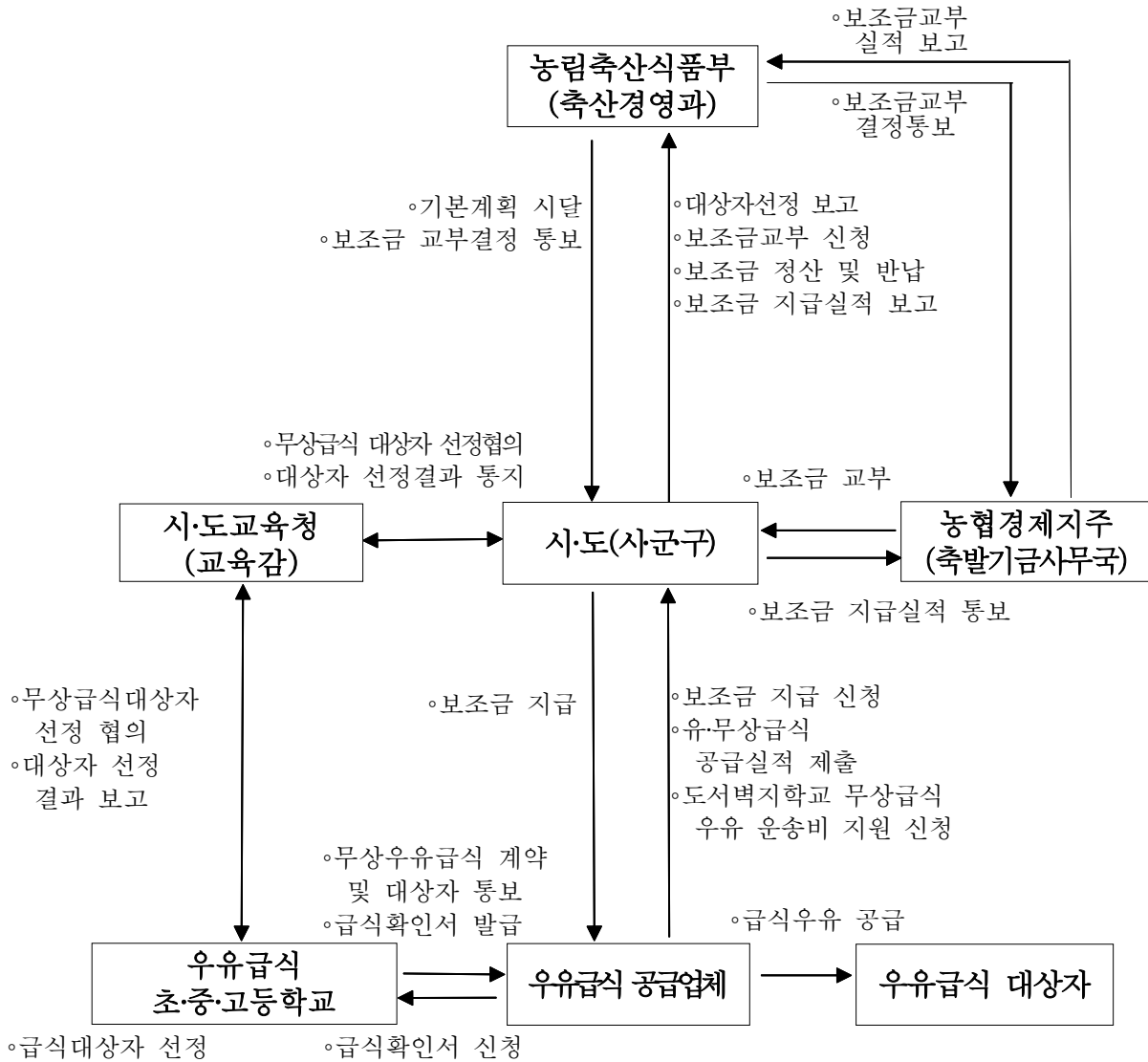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학교우유급식	61,705	61,705	61,945	75,490
- 축산발전기금	37,016	37,016	37,256	45,390
- 지방비	24,689	24,689	24,689	30,100

*산출내용(702천명*430원*250일)

□ 학교우유급식사업 흐름도



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상담) 12회 운영...7건 해결

- 특별컨설팅(상담) 운영...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고충 해소 -

(‘21.9.3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올 해에 9월까지 총 12회 실시해 7건의 기업고충을 해소했다.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5개 컨설팅 건은 고충민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한 민원해결 사례로 먼저 돌잔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요구가 있다.

돌잔치가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돌잔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에게 관련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고충사항이 반영됐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돌잔치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기관간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어렵게 했던 고충사항을 해결한 사례이다.

3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용산 지하철역과 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개설

문제를 관계기관간의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했고,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입찰 참여기업보다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지자체의 관행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결한 사례이다.

3년간 인근 기업에 양질의 증기를 제공해왔던 기업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양성화하도록 했고, 사업취지에 맞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지원기업을 선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골재재취를 위한 점·사용료 결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017년 12월 기업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출범했고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기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향후에도 민원해결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추진 현황

순번	컨설팅 대상	시행일	주요 고충사항	비고 (조치일)
1	돌잔치 전문점	2021. 1. 2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한 돌잔치전문점 영업제한 상황 해소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1. 2. 22.)
2	상가 상인 및 기업인	2021. 2. 18.	지하철과 상가간에 연결된 공중보행교 재건축	현장조정 (2021. 3. 30.)
3	골재채취업체	2021. 2. 25.	합리적인 점·사용료 적용	합의해결 (2021. 6. 21.)
4	증기판매업체	2021. 3. 5.	산업단지 내 증기판매 허용	의견표명 (2021. 3. 15.)
5	지하수업체	2021. 3. 18.	지하수 개발공사 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의견표명 (2021. 4. 19.)
6	지방 돌잔치 업체	2021. 4. 1.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지역의 뷔페, 돌상, 돌사진 업체 등의 고충 해소	의견표명 (2021. 5. 17.)
7	수출기업화 지원 업체	2021. 6. 1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대상 인정	의견표명 (2021. 7. 12.)
8	청소경비업체	2021. 4. 2.	단순노무용역의 연차수당 지급주체 개선	조사진행 중
9	폐철도 유원시설 업체	2021. 5. 21.	코로나19 피해에 유원시설 업체의 애로 해소	조사진행 중
10	건설자재업체	2021. 5. 28.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도로공사 2차 납품 업체 피해 해소	조사진행 중
11	지하철 공사 관련 건설·통신 업체	2021. 7. 7.	건설·통신업체 간의 통신선로 확보애로 해소 및 통학로 안전성 확보	조사진행 중
12	방산기업	2021. 9. 3.	공장 증축 등 경영애로 사항 해소	조사진행 중

국민권익위, 공직자 92.9% “청탁금지법 지지” 법 시행 초기 보다 증가

- 청탁금지법 시행 5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21.9.2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에 비해 각각 7.4%, 2.2%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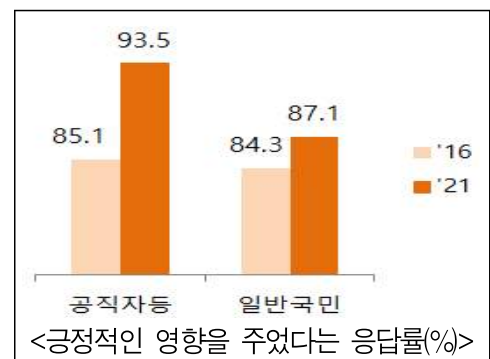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법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직자등과 일반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 목적 :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자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인식의 변화 조사
- ▶ 대상 : 총 2,003명[일반국민 800명,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업종 200명]
- ▶ 기간 : ’21.7.22.~8.9.,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비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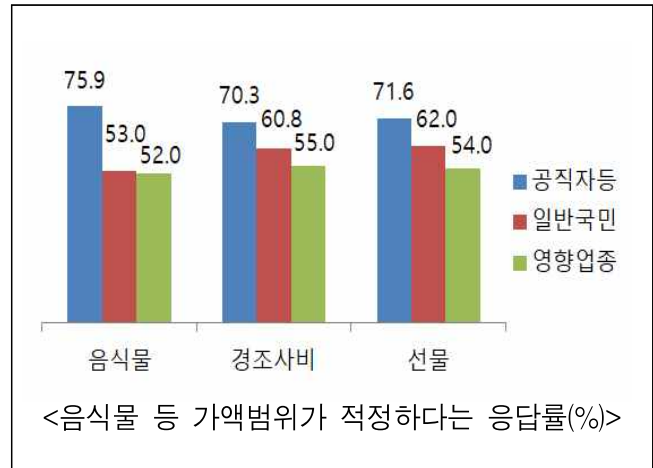
특히 공직자등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7.4% 포인트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등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했는데, 공직자등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등의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등은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나 증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등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패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